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정부 입법 주요 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여약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심사 중에 있음. 기금형제도는 연기금과 같이 기업 외부에 노·사가 선정한 대리인으로 구성된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연금자산 관리 및 운용하는 제도임. 개정안은 기금형제도 설정 및 수탁법인 설립과 구성원, 업무와 책무, 감사 등을 신설함. 법률 시행 시 향후 개별단위의 단독형기금과 지역, 협회, 계열사 등이 연합하여 설립하는 대형 퇴직연기금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국회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에 제출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금형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¹⁾을 현재 심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선택권 확대 및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밝힘²⁾
 - 기금형제도는 신탁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적립금 운용업무 위탁을 포함한 연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제도임

〈그림 1〉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 합동(2014. 8. 27)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2018. 4. 18)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 8. 31)

- 기금형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은 <표 1>과 같이 기금형제도 설정, 수탁법인 설립, 수탁법인의 구성, 업무와 책무, 법인의 감사 등의 내용을 신설함

<표 1> 기금형제도 관련 법률 주요 개정안 구성

조문	조문 제목	조문	조문 제목
제4조의 2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제31조의 7	수탁법인의 업무 수행
제31조의 2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제31조의 8	수탁법인의 운영비용 등
제31조의 3	수탁법인의 요건	제31조의 9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
제31조의 4	수탁법인의 설립	제33조의 2	수탁법인의 책무
제31조의 5	수탁법인의 명칭 등	제36조의 2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
제31조의 6	수탁법인의 기관	-	-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4. 18) 요약

■ 법률안 제4조의 2는 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하여 기금형제도 설정을 규정함

- 즉, DB형제도 또는 DC형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약형제도와 기금형제도 중에서 그 운용방법을 정하도록 명시함

■ 법률안 제31조의 2에서 9까지는 수탁법인의 설립과 구성, 요건과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제31조의 2는 독립된 외부기관인 수탁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선임하는 설립준비위원이 수탁법인 설립 및 임원 선임 업무를 담당함
- 제31조의 3은 수탁법인의 비영리재단 성격, 수탁법인이 만약에 적립금 직접 운용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융회사 수준의 자격 요건을 요구함
- 제31조의 4는 수탁법인 설립 시 정부 허가 요건, 제31조의 5는 “퇴직연금수탁법인”이라는 용어가 수탁법인 명칭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 제31조의 6은 <표 2>와 같이 수탁법인 안에 이사와 감사와 같은 구성원, 이사의 자격과 선정요건, 업무를 명시하고, 제31조의 7은 수탁법인의 운용·자산관리업무 위탁 또는 적립금을 직접운용 등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명시함

〈표 2〉 수탁법인 구성과 주요 업무

구분	구성	구성비	주요 업무	자격	결격사유
이사회	사용자 선임 이사	50%	·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행의 계약 체결 등	자산 운용에 전문성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수준
	근로자 선임 이사	50%			
감사	내부감사		· 수탁법인 감사 및 보고의무 -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 의무의 적법한 이행 여부 등 - 노·사에게 감사 결과 보고 · 외부회계감사 시행 기준 - 적립금 규모 일정 이상, 이사회 의결 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외부회계감사				

자료: 법률안 제31조의 6~제31조의 9 요약

■ 법률안 제33조의 2와 제36조의 2는 수탁법인의 감사와 감독당국의 수탁법인 감독을 규정함

- 즉, 제33조의 2는 수탁법인의 법률준수 및 성실 의무, 정부에 보고의무 등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
- 제36조의 2는 고용노동부의 수탁법인과 구성원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등을 규율함

■ 개정 법률안이 2018년도 회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2019년³⁾ 중에 기금형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기금형제도 시행 시 회사단위의 개별 수탁법인(단독형기금)은 물론 각 협회, 지역공단 및 상공회,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개 기업이 연합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대형 퇴직연기금 수탁법인(연합형기금)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kiri**

3) 법률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